

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(제33조 관련)

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	신고기준		업무범위
	기술인력	사무실	
엔지니어링업	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 함하여 같은 호에 따 른 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3명 이상	엔지니어링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사무 실을 보유할 것	엔지니어링활동
엔지니어링 컨설팅업	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	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	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연 구, 기획, 자문, 지도

비고

1.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2.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.
3.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.
4.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